

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3174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3. 3. 6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3월 6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안전관리자문위원의 거주지 제한요건을 삭제하여 김포시 안전관리 자문을 희망하는 전문기술자의 참여를 원활히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안전관리자문위원 거주지 제한 요건 삭제(안 제3조)
- 나. 불일치 조항 본문에 맞게 수정(안 제7조제3항)

4. 검토의견

- 김포시 안전관리 자문을 희망하는 전문기술자의 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의 거주지 제한요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,
- 시설물 안전 점검, 안전대책 수립 등의 자문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·효율적인 자문 가능 여부 등 거주지 제한요건 삭제에 따른 장단점 및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.